

## 돌아 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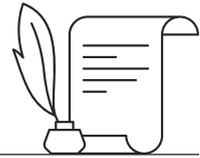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<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>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# 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14)





### 제13차 개정('02.12.30)

#### 개정사유

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·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교대작업, 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, 작업계획 수립시 근로자 의견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

제1항 : 근로자의 생명보전 →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, 근로자의 생명보전

### 제24차 개정('09.2.6)

#### 개정사유

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 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·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지도·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음

–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·평가하여 이를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

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·권고할 수 있도록 함(제27조 참조)

#### 개정내용

제1항 :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→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/ 준수하며, 당해 → 지키며, 해당 /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→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/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→ 조성함으로써 / 예방하고,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→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/ 유지·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,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→ 유지·증진시켜야 하며,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

– 후단 : 신설

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항 : 전문개정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,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
1. 기계·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·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
2. 원재료 등을 제조·수입하는 자
3. 건설물을 설계·건설하는 자

**제32차 개정('13.6.12)**

**개정사유**

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법 제5조제1항에 “사업주에게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”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-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무에 포괄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노사의 이해도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현행 조문에서 분리하여 다른 조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위험성평가 운영에 필요한 고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**개정내용**

제목 : 사업주의 의무 → 사업주 등의 의무

제1항 : 전문개정
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는 한편,

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

1.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
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
3. 해당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

제2항 :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→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

**제6조(근로자의 의무)**

제6조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**제정('81.12.31)**

제5조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

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주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### 제1차 개정('90.1.13)

#### 개정사유

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“필요한 사항”이라는 추상적인 표현과 “기타 관계인”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법 제정 의도에 맞게 명확히 표현하고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

#### 개정내용

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→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/ 관계인이 → 관련단체에서 / 협력하여야 한다. → 따라야 한다.

### 제24차 개정('09.2.6)

#### 개정사유

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#### 개정내용

본문 :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

을 →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/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→ 지켜야 하며,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

### 제32차 개정('13.6.12)

#### 개정사유

근로감독관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준수 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 강화

#### 개정내용

본문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→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/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→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자가 ☞

